서 면 답 변 서

○김춘수 의원

(질의요지)

□ 중단 또는 지연된 서울시 발주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요망

(답 변)

□ 민간투자도로사업(은평새길,평창터널)

○ 부서의견

일부 민자도로사업이 시 재정여건,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 시의원,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사업별로 의견수렴 절차 적극 추진 등 사업추진 정상화 지속 노력

(질의요지)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토록 예산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요망

(답 변)

□ 재정투자 도로사업

○ 부서의견

대규모 도로사업의 경우 시 재정여건, 관련계획, 민원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불가피하게 조정된 측면이 있으며, 사업추진 시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시행중에 있음.

○ 향후계획

공사기간 연장시 적정한 설계변경 등을 통해 반영예정

(질의요지)

□ 분리발주 활성화에 반대의견 제시요망

(답 변)

□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본 건의는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조례」 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 부서의견

본 개정조례안 상임위 상정(2013.4.25)시 의견개진

- 주요의견 -

분할발주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분할발주는 중소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짐.

○ 향후계획

- 2013.4.25 상임위 대안 의결
- 2013.5.16 일부개정조례 공포

- 주요 개정내용 -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하도록 함.

(질의요지)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건의

건 의 사 항

◆ 지방계약법령상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추가 비용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이 비용지급 거부하는 사례 발생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상 지급토록 예산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 요망

(답 변)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 공기연장은 대부분 발주부서의 예산편성 부족 및 보상지연, 시공물량 추가발생, 민원발생 등으로 발생되고,

○ 간접비의 구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발생 되는 간접노무비(현장 인건비 등)와 경비(사무실 운영비 등)임

□ 검토의견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사업 중 우리 본부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관련 규정대로 지급토록 하겠음

○ 특히, 공기 연장시 영세한 하도급업체나 장비·자재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의 규모·내용·기간 등 실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추가 비용을 반영하겠음.

※ 참고사항

1. 실 비 산 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2. 간접노무비 : 공사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내용·기간 등을 고려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노무량을 산정 설계반영

3. 경비-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 확인 반영

(질의요지)

□ 서울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합리적 운영

건 의 사 항

◆ 불공정 하도급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들만 동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들에게는 고정계좌의 선금 및 기성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토록 지원요망

◆ 동 시스템 적용업체의 경우, 선금과 기성금의 유용이 사실상 방지되고 대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선금보증서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토록 지원요망

(답 변)

□ 검토의견

○ 건설사의 대금e 바로 적용 면제 건의는 수용이 곤란함

- 현재 불공정 하도급 이력이 없다고 해서 불공정 하도급이 앞으로도 없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약자들 몫의 선금·기성금 전용은 불가

○ 선금의 보증서 발급 면제·인하는 수용 곤란하며, 하도급 보증 수수료 인하는 관계 기관 협의 추진

- 대금e바로를 적용한다고 해서 원도급자의 선급금 수령 후 공사 이행이 100%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급금보증서(평균 2%) 발급 면제는 곤란

- 다만, 대금e바로를 이용할 경우 하도급대금 유용이 불가하므로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 보증 수수료 인하 방안 협의

(질의요지)

□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개선

-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당초 공사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및 지원요망

(답 변)

□ 계약심사제도는 발주부서가 산정한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하여 설계의 오류와 과다책정된 원가를 바로잡는 제도임

□ 계약심사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일률적 삭감이 아니라 관령법령과, 거래실례가격, 품셈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발주부서 원가산정의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가격·기술정보 부족 등 업무미숙과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원가산정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심사의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절감사유에 대해 발주부서, 설계자 등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좀 더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음

(질의요지)

□ 입찰제도 개선후 서울시 실적공사비 도입

-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근접토록 하는등 실적공사비 적정화를 위한 입찰제도가 개선된 후 서울시 실적공사비 도입 지원요망

(답 변)

□ 실적공사비의 전면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추진방안모색, 관련데이터의 수집, 표준품셈과의 비교 등 제도도입에 필요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하락된 낙찰율의 반복적인 적용으로 실적공사비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는 2012년 국토해양부가 실적공사비 갱신시 설계가 대비 ±75% 이하의 계약단가를 제외하던 것을 ±95%로 조정하여 낙찰률의 반복 적용이 배제되도록 개선함으로서 많이 해소되었음

※ 20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개선사항

○ 실적공사비의 구조적인 하락방지
- 적격심사공사의 경우 설계단가 대비 95% 이하 계약단가 제외

구분	기존	개선
선별 기준	설계단가 - 계약단가 차이 ±25%	▸ 갱신항목 : ± 5%(선별강화) ▸ 신규항목 : ±25%(현행유지)

□ 앞으로, 우리시에서 실적 공사비를 확대 도입할 경우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질의요지)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발주 목표치 철회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답 변)

□ 우리 시는 하도급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목표치를 설정하여 각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에 시달하고 있음.

-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목표 : 25%('11년)→50%('12년)→50%('13년)

□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목표치 철회 요구을 하는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에 대해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무화(확대운영)를 주장하는 등 양 협회의 의견 대립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양측의 합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건설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개선 협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어음지급·체불, 하도급 이중계약 등 불법·불공정행위 사전차단 및 영세사업자인 하도급자의 지위 향상,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목표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함.

□ 그러나, 저가 하도급, 부당특약 등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목표 관리제 존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음.

(질의요지)

□ 지난 4.23일 시의회 건설위원회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사항 건의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⑴ 공공관리제도 의무 적용 폐지

⑵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 요망

(답 변)

□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시 입장을 명확하게 이미 여러 차례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건의내용은 '13.1.10. 이철우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하였으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하여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항입니다.

□ 서울시가 대한건설협회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관리제도 의무 적용 폐지에 대하여〉

○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주민 갈등 해소 및 이권업체 개입 없이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이며,

○ 조합의 업무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간 단축 및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불구하고, 공공관리 적용 여부를 주민선택제로 할 경우,

- 공공관리 선택 여부를 둘러 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 특히, 사업초기에는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공공관리 적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부조리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 종전에는 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09.10. 경실련 발표 : 가계약 대비 본계약 평균 사업비 45% 증가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설계도서와 공사비 내역을 갖추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 확정 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므로,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만 증가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 착공 : 평균 3년 이상 소요)

○ '09.2.6. 정비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조합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개정하였으나,

-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 시공자가 자금대여를 무기로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공정 계약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융자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까지 저리로 융자하여 이권업체 개입없이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보대출 : 3%, 신용대출 : 4.5%

□ 이와 같이 대한건설협회의 건의내용은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이 아니라, 공공관리를 회피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